|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3)>**  법석[2015]21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3)>이 2015년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6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11월 25일  보험계약 분쟁을 정확하게 심리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천과 결부하여 보험법상의 보험계약 장(章) 인신보험 부분의 관련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당사자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 또는 허락'은 서면형식, 구두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에 동의 또는 인정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후 추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액을 동의 또는 허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이 동의서에 대신 서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충분한 기타의 경우.  **제2조** 피보험자가 그가 보험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한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인신보험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와 허락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주동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자가 지정한 의료서비스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면제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관련 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6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아닌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체결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서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기(旣)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추가납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자가 효력 회복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중지 기간에 피보험자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보험자의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효력 회복 신청을 받은 후 30일내에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 회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납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회복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정 행위가 무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상 약정한 수익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쟁의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간에 계약외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법정(法定)' 또는 '법정(法定) 상속인'을 수익자로 약정한 경우 상속법에 규정한 법정(法定)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2) 수익자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자를 확정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시점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자를 확정한다.  (3) 수익자의 이름과 신분관계를 약정하였고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신분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변경 의사표시 발신 시점에 변경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의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자가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해행가 무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를 변경하였고 변경 후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2명 이상 지정하였고 일부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하였거나 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해당 수익자의 수익 할당분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계약에 이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익자의 수익 할당분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수익 순서와 수익 할당분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수익자들이 균등 분할한다.  (2) 수익 순서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수익 할당분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타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3) 수익 순서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수익 할당분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들이 균등 분할하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의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4) 수익 순서와 수익 할당분에 대해 약정한 경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하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의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제13조**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가 해당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였고 당사자가 그 양도 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유산에 해당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보험자가 보험증서를 소지한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험자의 항변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속관계에 있는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망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보험법 및 이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계약 해제 시점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른 주체이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증서 현금가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해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불구 또는 질환이 발생하였고 보험자가 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환불하는 경우 피보험자, 피보험자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기타 권리자를 확정한다.  **제17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증서의 현금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보험자가 비용보상형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국비의료 또는 사회의료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당해 보험상품의 의료비 보험요율 책정 시 국비의료 또는 사회의료보험 부분을 공제하였고 공제 후의 표준에 따라 보험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에 기본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책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의료비 지출이 기본의료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비용 지출이 기본의료보험의 동종류 의료비용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약정한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상황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즉시 치료를 받았어야 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자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가 자살 시 민사행위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보험법 제45조에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범죄'는 형사수사기관, 검찰기관 및 심판기관의 확정 법률문서 또는 기타 결론적인 의견에 의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가 보험법 제45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불구 결과가 피보험자가 실시한 고의범죄 또는 법에 따라 취해진 형사강제조치 거부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구속·수형기간에 불의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불구 또는 사망하였고 보험자가 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망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후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선고가 보험책임 기간 이외의 기타 일자에 내려졌으나 행방불명일이 보험책임 기간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음에 따라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피보험자의 손실이 보험사고 또는 비(非)보험사고 또는 면책사유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비율에 따라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제26조** 이 해석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보험계약 분쟁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으며;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나 당사자의 재심 신청 또는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若干问题的解释（三）》**  法释〔2015〕21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若干问题的解释（三）》已于2015年9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6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2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11月25日  为正确审理保险合同纠纷案件，切实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结合审判实践，就保险法中关于保险合同章人身保险部分有关法律适用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当事人订立以死亡为给付保险金条件的合同，根据保险法第三十四条的规定，“被保险人同意并认可保险金额”可以采取书面形式、口头形式或者其他形式；可以在合同订立时作出，也可以在合同订立后追认。  有下列情形之一的，应认定为被保险人同意投保人为其订立保险合同并认可保险金额：  （一）被保险人明知他人代其签名同意而未表示异议的；  （二）被保险人同意投保人指定的受益人的；  （三）有证据足以认定被保险人同意投保人为其投保的其他情形。  **第二条** 被保险人以书面形式通知保险人和投保人撤销其依据保险法第三十四条第一款规定所作出的同意意思表示的，可认定为保险合同解除。  **第三条** 人民法院审理人身保险合同纠纷案件时，应主动审查投保人订立保险合同时是否具有保险利益，以及以死亡为给付保险金条件的合同是否经过被保险人同意并认可保险金额。  **第四条** 保险合同订立后，因投保人丧失对被保险人的保险利益，当事人主张保险合同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五条** 保险合同订立时，被保险人根据保险人的要求在指定医疗服务机构进行体检，当事人主张投保人如实告知义务免除的，人民法院不予支持。  保险人知道被保险人的体检结果，仍以投保人未就相关情况履行如实告知义务为由要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六条** 未成年人父母之外的其他履行监护职责的人为未成年人订立以死亡为给付保险金条件的合同，当事人主张参照保险法第三十三条第二款、第三十四条第三款的规定认定该合同有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经未成年人父母同意的除外。  **第七条** 当事人以被保险人、受益人或者他人已经代为支付保险费为由，主张投保人对应的交费义务已经履行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八条** 保险合同效力依照保险法第三十六条规定中止，投保人提出恢复效力申请并同意补交保险费的，除被保险人的危险程度在中止期间显著增加外，保险人拒绝恢复效力的，人民法院不予支持。  保险人在收到恢复效力申请后，三十日内未明确拒绝的，应认定为同意恢复效力。  保险合同自投保人补交保险费之日恢复效力。保险人要求投保人补交相应利息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九条** 投保人指定受益人未经被保险人同意的，人民法院应认定指定行为无效。  当事人对保险合同约定的受益人存在争议，除投保人、被保险人在保险合同之外另有约定外，按照以下情形分别处理：  （一）受益人约定为“法定”或者“法定继承人”的，以继承法规定的法定继承人为受益人；  （二）受益人仅约定为身份关系，投保人与被保险人为同一主体的，根据保险事故发生时与被保险人的身份关系确定受益人；投保人与被保险人为不同主体的，根据保险合同成立时与被保险人的身份关系确定受益人；  （三）受益人的约定包括姓名和身份关系，保险事故发生时身份关系发生变化的，认定为未指定受益人。  **第十条** 投保人或者被保险人变更受益人，当事人主张变更行为自变更意思表示发出时生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投保人或者被保险人变更受益人未通知保险人，保险人主张变更对其不发生效力的，人民法院应予支持。  投保人变更受益人未经被保险人同意的，人民法院应认定变更行为无效。  **第十一条** 投保人或者被保险人在保险事故发生后变更受益人，变更后的受益人请求保险人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二条** 投保人或者被保险人指定数人为受益人，部分受益人在保险事故发生前死亡、放弃受益权或者依法丧失受益权的，该受益人应得的受益份额按照保险合同的约定处理；保险合同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的，该受益人应得的受益份额按照以下情形分别处理：  （一）未约定受益顺序和受益份额的，由其他受益人平均享有；  （二）未约定受益顺序但约定受益份额的,由其他受益人按照相应比例享有；  （三）约定受益顺序但未约定受益份额的，由同顺序的其他受益人平均享有；同一顺序没有其他受益人的，由后一顺序的受益人平均享有；  （四）约定受益顺序和受益份额的，由同顺序的其他受益人按照相应比例享有；同一顺序没有其他受益人的，由后一顺序的受益人按照相应比例享有。  **第十三条** 保险事故发生后，受益人将与本次保险事故相对应的全部或者部分保险金请求权转让给第三人 ，当事人主张该转让行为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根据合同性质、当事人约定或者法律规定不得转让的除外。  **第十四条** 保险金根据保险法第四十二条规定作为被保险人的遗产，被保险人的继承人要求保险人给付保险金，保险人以其已向持有保险单的被保险人的其他继承人给付保险金为由抗辩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五条** 受益人与被保险人存在继承关系，在同一事件中死亡且不能确定死亡先后顺序的，人民法院应根据保险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推定受益人死亡在先，并按照保险法及本解释的相关规定确定保险金归属。  **第十六条** 保险合同解除时，投保人与被保险人、受益人为不同主体，被保险人或者受益人要求退还保险单的现金价值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保险合同另有约定的除外。  投保人故意造成被保险人死亡、伤残或者疾病，保险人依照保险法第四十三条规定退还保险单的现金价值的，其他权利人按照被保险人、被保险人继承人的顺序确定。  **第十七条** 投保人解除保险合同，当事人以其解除合同未经被保险人或者受益人同意为由主张解除行为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被保险人或者受益人已向投保人支付相当于保险单现金价值的款项并通知保险人的除外。  **第十八条** 保险人给付费用补偿型的医疗费用保险金时，主张扣减被保险人从公费医疗或者社会医疗保险取得的赔偿金额的，应当证明该保险产品在厘定医疗费用保险费率时已经将公费医疗或者社会医疗保险部分相应扣除，并按照扣减后的标准收取保险费。  **第十九条** 保险合同约定按照基本医疗保险的标准核定医疗费用，保险人以被保险人的医疗支出超出基本医疗保险范围为由拒绝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不予支持；保险人有证据证明被保险人支出的费用超过基本医疗保险同类医疗费用标准，要求对超出部分拒绝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条** 保险人以被保险人未在保险合同约定的医疗服务机构接受治疗为由拒绝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被保险人因情况紧急必须立即就医的除外。  **第二十一条** 保险人以被保险人自杀为由拒绝给付保险金的，由保险人承担举证责任。  受益人或者被保险人的继承人以被保险人自杀时无民事行为能力为由抗辩的，由其承担举证责任。  **第二十二条** 保险法第四十五条规定的“被保险人故意犯罪”的认定，应当以刑事侦查机关、检察机关和审判机关的生效法律文书或者其他结论性意见为依据。  **第二十三条** 保险人主张根据保险法第四十五条的规定不承担给付保险金责任的，应当证明被保险人的死亡、伤残结果与其实施的故意犯罪或者抗拒依法采取的刑事强制措施的行为之间存在因果关系。  被保险人在羁押、服刑期间因意外或者疾病造成伤残或者死亡，保险人主张根据保险法第四十五条的规定不承担给付保险金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四条** 投保人为被保险人订立以死亡为给付保险金条件的保险合同，被保险人被宣告死亡后，当事人要求保险人按照保险合同约定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被保险人被宣告死亡之日在保险责任期间之外，但有证据证明下落不明之日在保险责任期间之内，当事人要求保险人按照保险合同约定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五条** 被保险人的损失系由承保事故或者非承保事故、免责事由造成难以确定，当事人请求保险人给付保险金的，人民法院可以按照相应比例予以支持。  **第二十六条** 本解释自2015年12月1日起施行。本解释施行后尚未终审的保险合同纠纷案件，适用本解释；本解释施行前已经终审，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案件，不适用本解释。 |